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